

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-180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체육단체 운영지원의 구체적 근거 및 통제장치 마련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조항 신설 (안 제3조의2)

나. 용도 외 사용금지 등 조항 신설 (안 제4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0. 10. 8. ~ 10. 28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3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해당없음

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5) 제2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0.11.10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) ① 구청장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회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회(이하 “체육회 등”이라 한다)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사무실 운영경비
2. 사무실 임차료
3.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

② 체육회 등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에 대하여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5조를 삭제하고, 제4조를 제5조로 하며,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용도 외 사용금지 등) ①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20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1.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
2. 보조금 전용카드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

제5조(종전의 제4조)제1항 중 “제3조”를 “제3조 및 제3조의2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<u>제3조의2(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)</u></p> <p>① 구청장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회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회(이하 “체육회 등” 이라 한다)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무실 운영경비 2. 사무실 임차료 3.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<p>② 체육회 등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에 대하여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</p>
<p><신 설></p>	<p><u>제4조(용도 외 사용금지 등) ①</u></p> <p>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 제20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②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</p>

제4조(지도·감독)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,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,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5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1.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
2. 보조금 전용카드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

제5조(지도·감독) ① -----
제3조 및 제3조의2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2호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 : 관광일자리국 생활체육과 강종업 (☎ 3153-9862)